

수원고등검찰청 제3회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수원고등검찰청에서는 2019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시기
공업직 (전기)	1명	- 전기시설 관리 및 시설(건축)관리 - 민원 사무 및 일반 사무 보조	수원고등검찰청	2019. 4월 중 (예정)

2 근거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마.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성별, 학력, 거주요건 : 제한 없음

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공업직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2년) 자격증 소지자 <p>※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p> <p>➢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p>

[서류전형 우대사항 및 가산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인정기준일 : 원수접수 마감일]

1) 우대사항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우대사항에서 말하는 근무경력에서 제외함

ex)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우대사항의 근무 경력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근무한 경우 1년의 근무경력을 우대사항으로 인정

②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워드(종전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건축 관련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차등배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 소방설비

기능사 :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건축도장

2)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급 > 2급)

- 만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적용, 등급별 차등 배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4. 1. 1. 이후 실시한 시험만 인정

※ 가. ~ 바.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우대요건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19. 3.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19. 3. 13.(수) ~ 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고등검찰청 총무과, 1917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 3. 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19. 4.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고등검찰청 	
최종합격자 발표	'19. 4. 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문상 제시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가산요건
-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 ①경력(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③소득금액 증명을 제출 받아 진위여부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경력 인정
- ※ 경력 진위여부 확인 절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건강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행)을 모두 제출(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경력조회 실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수원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19. 3. 13.(수) ~ 2019. 3. 15.(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다. 접 수 처 : 수원고등검찰청 1917호, 총무과

❖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등검찰청 1917호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인터넷, 택배 접수 불가
-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3)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4)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6)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자필기재) 1부
-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자필기재)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 3. 4.)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나. 최종 합격시

- 1) 신원진술서 2부
- 2) 기본 증명서 2부
-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2매)

8 신분 및 보수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9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제출서류의 누락 여부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아.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고검 인사팀(031-5182-33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